

# 환경친화축산농장 소개



## 정의

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

**근거** 「가축분뇨법」 제9조,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4호 및 「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(고시)」



## 대상

「가축분뇨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증 소(젖소 포함)·돼지·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



## 지정기준

심사 결과 만점(합계 200점)의 80% 이상(160점 이상, 가점포함) 획득 시

\* 다만, 분야별 점수가 60% 미만인 경우 또는 결격(★표로 표시된 항목)이 있을 시 제외



## 지정절차

신청(농가) → 접수(농식품부) → 심사위원 구성 및 신청서류검토(관리원) → 현장심사 → 지정심의위원회 → 지정(농식품부)

\* 신청서류 검토: 신청 자격, 신청 서류 완비 등 확인 후 농식품부 보고

# 환경친화축산농장 사업 절차도

1



## 지정신청

신청서 제출

\* 축산농가 → 농식품부



2



## 서류검토

서류검토

\* 농식품부(축산환경관리원)



3



## 신청농장 현장심사

농식품부 및 전문가 합동 심사

\*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심사 실시(점수화)



4



## 지정심의위원회

농식품부 및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

\*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



5



## 지정 또는 보완

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→ 지정서 교부(신청농가)

\* 농식품부 → 종합심사 결과, 적합한 경우



6



## 지원 및 지도·교육

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  
(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) 지원한도 20% 추가  
농장주 대상 교육



7



## 사후관리

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·점검 실시  
(매년 3분기)

\* 지정기준 등 미이행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